

강원관광대학 겸임·초빙 교원 임용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7조,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관광대학 겸임·초빙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(개정 2008.11.13.)

제 2 조 (자격) ①겸임·초빙교원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 16조의 교수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항 및 제3항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라야 한다.(신설 2008.11.13.)

단, 특수한 교과외의 경우 교수자격기준에 미달하나 당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가로서 인정될 수 있는 자로 한다.(개정 2008.11.13.)

② 겸임교원의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다.(개정 2008.11.13.)

1. 담당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자
2.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.
3.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은 자.
4. 임용기간동안 계속하여 주당 3시간이상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.

③ 초빙교원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조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다.(신설 2008.11.13.)

1. 국가기관, 교육기관, 연구기관, 산업체 등의 당해분야 유경험자
2. 임용일 현재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3.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.
4. 임용기간동안 계속하여 주당 12시간이상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.

제 3 조 삭제 (2008.11.13.)

제 4 조 (대우) ① 초빙교원은 교육 및 연구 기타 학술활동을 위하여 교육 및 연구시설을 지원 할 수 있다.(개정 2008.11.13.)

② 겸임·초빙교원에 대한 일정액의 기본급 및 수당등 강사료의 지급 기준액은 매 학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하되, 초빙교원은 연봉제로 계약 임용할 수 있다.(개정 2008.11.13.)

제 5 조 (임기) 겸임·초빙 교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임용기간 만료 후 별도 해임 발령 없이 당연 퇴직된다.(개정 2008.02.11, 2008.11.13.)

제 6 조 삭제 (2008.11.13.)

제 7 조 (임용절차) ① 겸임·초빙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제

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.

② 초빙교원은 학과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제청으로 임명권자가 1회에 한해서 재임용 한다.

③ 재임용은 임용기간만료 1개월 전에 통보하며,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초빙교원은 학기말에 자동 해임되며, 별도의 해임통보 조치나 재임용은 하지 않는다.

(신설 2008.11.13.)

제 8 조 (복무) ① 초빙교원의 복무사항에 관하여는 학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1. 강의, 연구, 학생지도, 학생취업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2. 주중 3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.

3.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초빙교원은 각호의 모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임용계약을 해지 한다.

(신설 2008.11.13.)

제 9 조 (임용제한)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합하여 법정 교원정원의 2분의1범위 내에서 임용하되,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합한 채용인원이 전임교원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.(신설 2008.11.13.)

제 10조 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(신설 2008.11.13.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임용된 겸임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